

고등직업교육혁신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 2022.07.20. 개정 2023.06.26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이하 HiVE 사업)의 수행을 위한 고등직업교육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① HiVE사업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② HiVE사업 주요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 ③ HiVE사업 운영 거버넌스 구축 협력 활동에 관한 사항
- ④ HiVE사업비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⑤ 기타 HiVE사업에 관한 사항

제3조 (규정 적용범위)

이 규정은 HiVE사업에 한정하여 적용되며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 (구성)

- ① 위원회는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해전대학교 총장과 홍성군수가 공동위원장이 된다. 이 경우 공동위원장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공동위원장 간 협의에 의한다.
- ② 위원은 사업수행을 위해 해전대학교,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산업체 인사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5조 (임기)

- ① 위원의 임기는 HiVE사업 종료 시까지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 임기는 조정될 수 있다.
- ② 위원이 궐위 된 경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회의)

-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와 운영을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2인을 두며, 해전대학교와 홍성군 직원으로 한다.

제8조 (회의록의 작성)

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 (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부 칙(2022.07.20.)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0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06.26.)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06월 26일부터 시행한다.